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번 호	26 - 4
-------------	--------

제출년월일: 2026. 1.

제출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 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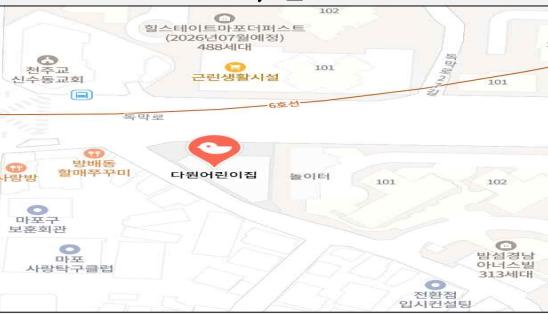
- 기존 위탁 운영 및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시설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 보장(최초운영권 5년, 서울시 지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및 규모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비고
			면적(m ²)	정원(명)	
1	꿈빛	백범로31길 7, 103동 1층(공덕동)	182	30	
2	다원	독막로 192(신수동)	420	55	
3	해솔	서강로 75-16, 1층(창전동)	200	30	
4	산들	대홍로 24길 24(염리동)	545	80	
5	해들	송문16다길 10-5(염리동)	229	30	
6	샘물	방울내로 21(망원동)	624	90	
7	공덕	효창목5길 18(공덕동)	417	49	
8	행화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아현동)	321	55	
9	새빛	백범로31길 8, 202동 1층(공덕동)	187	30	

○ 위치도

1	꿈빛	2	다원
			
3	해솔	4	산들
			
5	해들	6	샘물
			
7	공덕	8	행화
			
9	새빛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연번	어린이집명	위탁기간	비고
1	꿈빛	2026. 01. 19. ~ 2031. 01. 18.	
2	다원	2026. 02. 01. ~ 2031. 01. 31.	
3	해솔	2026. 03. 01. ~ 2031. 02. 28.	
4	산들	2026. 06. 01. ~ 2031. 05. 31.	
5	해들	2026. 06. 01. ~ 2031. 05. 31.	
6	샘물	2027. 01. 01. ~ 2031. 12. 31.	
7	공덕	2027. 01. 01. ~ 2031. 12. 31.	
8	행화	2027. 01. 01. ~ 2031. 12. 31.	
9	새빛	2025. 09. 01. ~ 2030. 08. 31.	중도포기로 인한 재위탁

※ 새빛: 기존 수탁체의 운영 중도 포기로 신규 수탁체를 선정(기존 수탁기간: 2021. 3. 1. ~2026. 2. 28.)

바.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5. 12. 31. 기준)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계	국비	시비	구비
1	꿈빛	187,889	9,526	125,367	52,996
2	다원	298,678	75,906	144,696	78,076
3	해솔	219,130	9,479	135,901	73,750
4	산들	368,057	12,269	248,869	106,919
5	해들	183,794	9,217	122,450	52,127
6	샘물	525,704	121,021	272,384	132,299
7	공덕	331,439	84,041	161,889	85,509
8	행화	414,528	108,784	197,945	107,799
9	새빛	138,813	4,568	94,934	39,311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신규 설치 및 기존 위탁 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 ~ 제22조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1조(수탁자 모집)

-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2조(위탁기간)

-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축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는 임대 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